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완조치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 물 복 지 정 책 과]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국내 현황 및 문제점	2
III. 해외 사례 및 시사점	6
IV. 개선 방향 및 전략	9
V. 추진 방안	10
1. 불법 입지 및 건축 문제 해소	10
2. 시설개선 지원	13
3. 운영 정상화 지원	14
4. 관리 강화 및 신고제 정착	17
VI. 향후 일정	18

I. 추진 배경

□ 사실 보호소 역할정립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

- ‘90년대 후반 민간 자발적으로 피학대·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시설이 운영되기 시작된 이후 약 140여개로 확대(‘22)
-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 등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개념과 함께 신고제 도입

(‘22.2.3. 한국일보) 동대문구 5평 원룸에서 고양이털, 배설물과 뒤엉켜 살고있는 고양이 32마리를 구출, 태안군에서는 14평 아파트에서 쓰레기와 살고있는 80여 마리 고양이 구출, **병적으로 동물을 수집해 학대하는 애니멀호더 문제 심각...**

□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보호시설의 **입지, 시설 및 운영이 열악**

- 일정 규모 이상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시설·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대다수 보호시설 환경은 매우 열악
 - * 충분한 공간 확보, 청결한 먹이 보관 시설, 별도 치료실, 배설물 처리 등
- 많은 보호시설이 불법 입지 및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설개선 지원 등도 어려운 상황

▶ 사례조사 102개 중 80개소(78%)가 **입지·시설 등에 법적 쟁점사항 존재**
- (입지) 「국토계획법(46개)」, 「가축분뇨법(74개)」, 「농지법(4개)」, 「산지법(9개)」, 「개발제한구역법(8개)」 / (건축물) 건축신고 필요한 경우 36개 등

□ 신고제 **시설·운영 기준 충족 준비**를 위해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 400마리 이상 보호 중인 민간보호시설에 신고제 우선 적용(‘23.4.27)
- 100~400마리 미만은 2년(‘25.4.27일 시행), 20~100마리 미만은 3년(‘26.4.27)의 준비 기간 부여(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 **국내 실태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운영 문제 개선** 및 **신고제 정착** 대책 추진

II.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현황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 '22)

□ (전체) 전국 약 140개 시설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개인 운영

- 보호시설 명의로 운영되는 시설이 약 140개 있는 것으로 조사('22)
* '22년 실태조사 결과 136개로 추정, 동물보호소 표방 판매업체 등 제외 시 102개소
-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54.7%)을 차지하며(95개 기준), 다음으로 비영리법인(27.4%), 비영리 민간단체(17.9%) 순으로 조사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서울18개, 인천·경기42개 등 60개) 되어 있고 부산·경상 34개, 대전·충청 15개, 전라 19개 등으로 나타남

□ (보호동물) 평균 119마리를 보호, 개의 비중이 높음(95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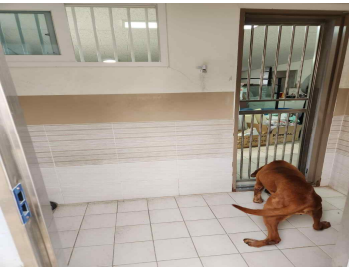
- 95개소에서 총 11,281마리를 보호 중인 것으로 추정(평균 119마리), 100마리 이상 보호하는 곳은 45.3% 차지(43개소)
- 개와 고양이를 함께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64.2%로 가장 많으며, 개만 보호하는 시설 23.2%, 고양이 보호시설 12.6% 수준
- 동물 구조 후 치료, 보호, 입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돌봄 수준·양육환경 등 차이 존재(☞ 참고1)
* 예) 동물 전용 치료시설과 전담 수의사 보유 시설은 5개소

□ (운영) 마리당 年 175만원 소요, 기부금·자원봉사에 의존(95개소 기준)

- 보호동물 1마리당 연평균 175만원* 가량 소요되나 시설 운영비 대부분을 기부금(52%), 개인 자부담(41.1%)으로 충당(95개소 기준)
* 동물관리비: 46.8%(81.7만) + 인건비:26%(45.4만) + 시설유지비:17.2%(30만) 등
- 평균 종사자 수는 3.6명으로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83.2%), 보호시설의 84%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음
* 월평균 봉사자는 시설당 56명이나 우수한 시설에 봉사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음

참고1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사례 비교(예시)

구분	A시설	B시설	C시설
건축물	건물 4개동 (콘크리트·벽돌)	조립식·컨테이너 3개동	비닐하우스 등 가설물
보호 마리수	개 298마리	개 230마리, 고양이 150마리	개 300마리 이상 (대부분 믹스견)
거주방식	개별거주(독방 제공) * 개별 마당 등 제공	개별거주(펜스로 분리)	무리 거주
돌봄방식	개별 맞춤형 돌봄 (사료·치료·거주·산책 등)	일부 개별 맞춤형 돌봄 * 병원 치료 등 제공되나, 세밀한 관리 곤란	무리 단위 사료·물 제공 *병원 치료 등 제공되나, 산책 등은 불가능
냉난방	바닥난방, 에어컨 설비	냉난방 기계 설치	제공되지 못함
중성화	중성화 완료	중성화 완료	일부 중성화 완료 (임신·출산 반복)
연간 구조·입양 (‘22)	구조 201마리, 입양 130마리	구조 65마리, 입양 30마리	과밀화 및 인력부족으로 구조 활동 불가능, 입양 24마리(해외입양)
부대시설	동물병원, 목욕시설 등	산책 운동장	없음
사진			
			

□ (입지·건축) 대부분 입지 및 건축물 용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 토로

○ 사례조사(102개) 결과, 보호시설 입지와 건축물 용도가 매우 다양

※ 민간동물보호시설(102개) 입지 및 건축물 용도 현황

- ▶ (입지) ①도시지역 55개(주거27, 상업4, 공업2, 녹지22) ②관리지역 33개(보전관리5, 생산관리11, 계획관리17), ③농림지역 11개, ④자연환경보전지역 1개 등
 - 이 중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법」) 10개소(녹지9, 계획관리1), 가축사육제한구역(「가분법」) 93개소(조례허용 27개) 해당
- ▶ (건축물용도) 가설건축물 36개, 동물 및 식물시설 10, 단독주택 등 27, 근린생활시설(제1·2종) 24, 기타(사무실 등) 6

○ 102개소 중 약 80개가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등의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사항(일부 보호시설은 중복)

- 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위반* 여부
 - *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불가능 건물 등 규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 ② 「건축법」상 어떤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정리
 - * 단독·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동식물시설 등 다양하게 신고
- ③ 「가축분뇨법」상 허용되지 않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
 - *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가능한 시설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가능한 시설에 未포함
- ④ 「개발제한구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
- ⑤ 「농지법」상 전용허가가 안되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
 - *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허가·신고 가능 대상에 민간동물보호시설 未포함
- ⑥ 「산지보전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안되는 보전산지*에 위치
 - * 보전산지 산지전용 대상에 민간동물보호시설 미포함
- ⑦ 가설건축물을 짓기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가설건축물은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농지는 전용허가) 받아야 함(사후 불가)

□ (시설·운영) 시설·운영이 열악하여 대부분 신고제 기준 미충족

- 필수 시설인 별도 격리실, 사료보관실 등이 없는 곳이 많으며, 화재예방 설비나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음
 - * CCTV 미비(34.7%), 격리실 미비(45.3%), 사료보관실 미비(21.1%), 화재예방 설비 미비(16.8%) 냉방시설 미비(7%), 난방시설 미비(4.4%), 권장사항인 진료실 미비(89.5%) 등
-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 운영기준*을 대부분 모르거나 미충족
 - * 중성화 수술 권장, 50마리당 1명 이상 보호인력,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동물등록
- 신고제 시설·운영기준 충족 등 준비를 위한 단계적 시행* 결정
 - * 400마리 이상 보호시설(23.4.27), 100마리 이상(25.4.27), 20마리 이상(26.4.27)

□ (동물보호) 중성화 미흡, 과밀사육, 애니멀호딩 등 개선과제 확인

- 암·수컷 분리사육 및 중성화수술 미흡,*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형견 비선호 등으로 인한 낮은 입양률로 과밀사육 발생
 - * 중성화 비율(95개소 기준) : (100%) 73.1%, (50~75%) 7.5%, (50% 미만) 4.3% 등
- 애니멀호딩 의심 시설도 소유권, 비용 등 문제*로 구조 곤란
 - * 예)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애니멀호더에게 있어 구조 후에도 애니멀호더가 요구하면 반환을 해 주어야 함

□ (분뇨처리) 분뇨처리 어려움 및 처리비용 부담 등 정책지원 요청

- 일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수거 거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분뇨 처리 거부,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갈등 등 문제 발생

* 예) P보호소: 신문지를 깔아서 사용 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신문지(분변 포함) 소각(월 약 150만원 지불),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희망

- 환경부는 민간보호시설을 「가축분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분뇨처리 방법 기준 명확화 요구 높음

Ⅲ.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사례(영국·미국 사례 중심)

□ (조직구조) 비영리민간조직 형태, 이사회 구성 및 대표자 지명

- 이사회가 핵심 역할을 하며 동물복지, 법, 재무, 수의학 분야 등 전문가 참여, 의장은 동물복지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자로 선출
- 대표(CEO or Chief Executive)는 의사, 비영리단체 활동, 경영가 등을 임명하여 단체 내 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도움되도록 운영
- 조직은 본부, 권역별 보호·입양시설 및 병원(치료센터) 등으로 구성

□ (역할) 구조·보호 외에 중성화 수술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구조·보호) 유기·학대 동물 신고, 구조, 치료, 보호 및 입양 지원
- (서비스) 중성화, 행동지도, 진료(응급 포함), 인식 교육 등
- (정책지원) 입법 청원, 학대 조사·고발, 캠페인, 국제 교류 등

□ (운영) 기부금 외에 입양·교육비 등을 받고, 자원봉사 활용

- (수입) 가장 큰 수입원은 서비스 수입이며 기부금 등도 주요 수입원
* 단체에 따라 유증 및 자산 소득, 기업 기부금, 투자 등의 수입원도 주요 역할
- (지출) 구조·치료·입양 등 활동이 대부분으로 행정비 10% 이하
* 동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향
-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연 인당 100시간 이상 봉사자 등)

□ (규모) 특정 지역 활동단체부터 글로벌 조직까지 갖춘 조직 존재

- 도시단위(ARL, 미국, 1899), 지역단위(MSPCA-Angell, 미국, 1864) 및 국가·글로벌 활동(RSPCA*, 영국, 1824/, HSUS**, 미국, 1954) 등 다양

* Royal Society for Protection of Cruelty to Animal. **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참고2

해외 민간동물보호 시설 및 활동 사례(예시)

구분	RSPCA(영국, 21)	MSPCA(미국, 21)	ARL(미국, '22)
설립	▶ 1824년 설립	▶ 1868년 설립	▶ 1899년 설립
조직구조	▶ 이사회(12명) ▶ 관리자 10명 (대표1명) ▶ 직원 1,305명 ▶ 14개 직영 동물센터 ▶ 145개 사무소 (45개 동물센터 별도 운영)	▶ 이사회(19명) ▶ 관리자 5명 (대표1명) ▶ 직원 680여명 ▶ 메사추세츠 내 입양센터(4), 의료센터(4)	▶ 이사회(14명) ▶ 관리자 4명 (대표1명) ▶ 직원 100여명 ▶ 보스턴 인근 입양센터(3), 의료센터(1)
활동 (역할·기능)	▶ 동물복지향상 캠페인 및 입법 청원 ▶ 학대 수사·기소 ▶ 동물 구조·재활 ▶ 동물진료서비스 ▶ 입양 및 방사 등	▶ 학대방지(홍보, 신고, 입법 노력 등) ▶ 동물진료서비스(응급포함) ▶ 동물 구조·치료(Shelter) ▶ 동물권 향상(advocacy) ▶ 입양, 훈련 등	▶ 동물진료서비스 ▶ 학대 예방, 조사 및 제도화 ▶ 돌봄 및 입양지원 ▶ 구조(사료지원 포함) ▶ 반려동물 행동지도 등
주요 활동 지표	▶ 학대조사 : 51,505건 ▶ 학대신고 : 108만건 ▶ 동물치료 : 88,994건 ▶ 중성화 : 46,806 ▶ 동물등록 : 37,435 (마이크로칩 이식) ▶ 동물구조 등 : 59,792 마리(야생동물 포함) ▶ 입양 : 26,945마리 ▶ 교육·훈련 : 총 59만명	▶ 입양 : 4,400마리 이상 ▶ 응급치료 : 36,631마리 ▶ 구명용백신: 43,153마리 ▶ 의료센터 치료 : 121,838마리 ▶ 사료 : 2,340,000끼 제공 ▶ 교육(동물복지 등) 참여 학생 : 1,254명	▶ 공동체 지원(소유자 있음) - 중성화 : 4,358마리 - 진료 : 4,103마리 - 사료 : 198,987끼 제공 ▶ 구조·보호 동물 케어 - 입양 : 2,856 마리 (행동교정 후 입양 포함) - 의료센터 등 진료 : 5,152 마리 ※ Live release : 91%
수입 (2021)	▶ 수입 : £ 152백만 - Legacy 수입 : £ 91백만 - 기부금 : £ 43백만 - 자선활동 : £ 7.6백만 - 투자수입 : £ 2백만	▶ 운영수입 : 90백만불 - 진료·입양: 69백만불 - 기부·보조 : 1.8백만불 - 투자수익 : 1.7백만불	▶ 운영수입 : 11.5백만불 - 투자수익 : 3.5백만불 - 서비스수입 : 3.5백만불 - 기부 : 2.9백만불 - 신탁수입 : 0.7
지출 (2021)	▶ 지출 : £ 116백만 - 현장동물복지 : £ 76백만 - 자금조성 : £ 22.2백만 - 사무소지원 : £ 7백만 - 캠페인·교육 : £ 5.5백만 - 기소활동 : £ 2.6백만	▶ 운영지출 : 92백만불 - 프로그램 : 82백만 (위생·진료 66, 구조·입양 ·교육 15 등) - 행정관리 : 6백만불 - 연간·고정 : 4백만불	▶ 운영지출 : 11.5백만불 - 프로그램: 9.2백만불 - 자금조성 : 0.7백만불 - 행정관리 : 1.6백만불
기타	▶ 408명 현장 구조자 ▶ 16,000명 자원봉사 ▶ 수입 82% 동물복지 지출	▶ 수의사 121명 활동 ▶ 프로그램 지출 90%가 동물에게 직접 혜택	▶ 적극 봉사자 1,100명 ▶ 재단·기업 후원 : 185개

2 시사점

□ 민간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입양 등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
 -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동물(고령견·환견, 질병으로 사육 불가 등) 들에 대한 보호 역할도 담당
-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때, 앞으로 민간동물보호 시설 및 기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영국 사례와 같이, 일정 비용을 받고 중성화, 파양 후 재입양, 입양교육 및 행동지도, 진료서비스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동물복지 이슈 해결 기여 전망

□ 오랜 기간 제도권 밖에서 방치,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얽힘

- 많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2000년대 이후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체계적 기준이 없어 입지*, 시설, 분뇨처리 등이 제각각 이루어짐
 - * 사례조사 102곳 중 80곳이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이 존재
-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민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 많음
 - * **B보호시설** : 주변 농장 불만 등 완화 위해 수시로 선물 등 제공, 보호시설용으로 축사(우사)를 구매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

□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과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대응전략 필요

-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시설 등의 입장에서 입지문제, 분뇨처리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민원사항
 - *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법상 건축용도 신고 시설에 대한 이견 등
 - 불법 입지, 미허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호·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기능 확대 등도 병행 추진할 필요

IV. 개선 방향 및 전략

비전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가 제공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목표

◇ 3년 내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 합법화 추진

* 입지 이전, 재건축 및 시설 개선 : ('23) 5개소 → ('24) 30 → ('25) 70

전략 및 과제	4대 전략	세부 추진 과제
	1. 입지·건축문제 해소	• (법해석) 가분법·국계법·건축법 해석 명확화 • (이전·재건축) 불법 입지·시설 이전·재건축 • (안내서) 입지·건축 제도 및 우수사례 안내
	2. 시설개선 지원	• (기준) 신고제 시설기준 안내서 마련 • (지원) 보호시설별 맞춤형 시설 개선
	3. 운영 정상화 지원	• (분뇨) 분뇨처리 기준 및 방법 명확화 • (중성화·입양) 중성화·입양 활성화 지원 • (역할) 기능 확대 및 수입원 다양화
	4. 관리강화 및 신고제 정착	• (단속·폐쇄) 동물학대 시설 단속·폐쇄 • (실태조사) 정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V. 추진 방안

1 불법 입지 및 건축 문제 해소

① 가축분뇨법 등 해석 명확화 ⇒ 약 40개소 법적문제 해결

□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에 동물보호시설 포함 조례 개정

- 환경부 유권해석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통일된 가축사육제한 예외* 적용 기준 조례(안) 및 조례 개정 권고 공문 발송('23.下)

* 환경부에서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 제8조 예외시설로 유권해석하였으나, 다수 지자체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시설 예외로 미인정(약 74개소)

- 통일된 조례 운용을 위해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에 동물보호시설을 포함하는 기준 배포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시 및 조례 개정현황 점검('23.下)

□ (건축법·국토계획법)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운영(국토부 협의)

-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주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지자체장) 재량 허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 가능

* 「건축법」 건축물 용도는 '건축허가 받은 주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지'가 합법 판단 기준

- (국토계획법) 건축법상 구분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입지여부 결정*

* 「국토계획법」은 시행령 별표에서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 종류 규정

- 지자체의 민간보호시설 허가 사례조사 및 주요 유형 설명('23.下)

□ (농지법)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전용허가 상한 면적 확대

- 민간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1,00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확대하도록 농지법령 유권해석 기준 배포('23.下)

-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10,000㎡인 점을 감안,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이에 포함되도록 유권해석

② 불법 입지 이전 및 시설 재건축

□ (대상선정) 입지 이전 및 재건축이 필요한 보호시설 구체화

- 농식품부 차원에서 관련 법상 불법 입지·건축물 유형 제시('23.下)
 - (이전) 법령해석·조례개정 등으로 입지문제 해결이 곤란한 시설

※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 예시**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8개), 보전산지(4개), 자연환경보전지역(1개), 농업진흥구역(3개) * 중복 존재

- (재건축) 관련 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 농식품부 가이드를 토대로 지자체별로 조사를 거쳐 현행법상 이전 또는 재건축 등을 추진할 민간동물보호시설 구체화('23.下)

□ (컨설팅) 부지확보, 건축물 허가 등 대안 및 절차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시설 이전, 입지, 건축물 허가 문제 등 불법 해소를 위해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23.下)

※ **무허가 축사환경 개선 및 컨설팅 사업 추진 사례('13.2.~)**

▶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를 위해 자진신고 및 적법화 방안 컨설팅, 축조허가 및 건축허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원스톱 컨설팅 추진

- 농식품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건축설계사, 행정사 등)가 참여하여 해당 시설별 맞춤형 방안 제시

□ (이전·재건축) 컨설팅을 토대로 이전 및 재건축 지원 추진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기존 시설 이전비 및 재건축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협의('23~)

* 부지매입비·임차비는 제외, 기존 시설 철거·이전설치비, 신규설치비용 등 포함

- 입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보호시설(단체)에서 확보
- 입지 이전 및 재건축기간 동안 민간시설 보호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업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외에 추가 비용은 후원금·수익사업* 등 활용
- * 전북 A 단체는 반려동물 용품 제작·판매, 민간편당업체 협업 등으로 자원 확보

③ 입지·건축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안내

□ (제도) 입지·건축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 제작 배포

- 민간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규정 및 사례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 제작 배포('23.下)
- 향후 불법적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적극 홍보·안내('24~)

□ (사례집) 기존 우수사례 및 법적 문제 해결사례 정리 안내

- 법적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우수사례와 불법 입지·시설 이전 및 재건축 사례 등도 유형화하여 발표('23.下)

2 신고기준에 맞춰 시설개선 추진

① 신고제 시설 기준 안내서 마련 및 지원 조건 개선

□ (시설기준)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시설기준 안내서 마련 및 홍보

- 「동물보호법」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설·운영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안내서 마련 및 설명회 개최('23.下)
-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시설·운영기준 홍보('24~'25)

□ (사업지원) 민간동물 보호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신고제 본격 시행*('26.4)에 앞서 시설개선 지원** 추진

* 400마리 이상('23.4 시행), 100~400마리 미만('25.4~), 20~100마리 미만('26.4~)

**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민의 위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 부터 ('23.4) 개설·운영 중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

② 시설 개선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시설별 개별 컨설팅을 거쳐 맞춤형 지원 추진
 - 시설별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보완 계획 수립 및 보완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 * 기존 시설 개보수, 보호공간 확장을 위한 신규 추가시설 설치(보호실·격리실 등)
- (사후관리 강화) 환경개선 지원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추진
 - 신고시설은 연 1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현황을 관리하고 보호센터와 같이 지자체의 연 2회 실적점검 검토
 - * (현행)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개정)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보호시설

3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정상화

① 분뇨처리 기준 및 방법 명확화

- (기준마련) 민간동물보호시설 분뇨 등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분뇨를 종량제 봉투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요청(“23.下)
 - *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외시설로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다수 지자체 용역업체의 처리 거부로 인해 종량제 폐기물 처리 곤란

② 중성화·입양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입양)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실태 조사 후 입양 활성화 지원 방안 검토
 -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 국내외 입양 추진 실태* 및 필요사항 등 파악(“23.下)

※ 국내외 해외 입양 추진 실태

- ▶ 용인 K단체 : 연간 300여마리 해외입양 지원(모두 기부금으로 충당)
- ▶ 국내 D단체 : 지자체 위탁, 국내 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연 200여마리)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안내·홍보** 등 지원방안 마련 검토*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양활동에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내 입양 활성화 플랫폼 사례(Pawinhand)

- ▶ 지자체 보호센터 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민간 플랫폼(앱, 2013년 개발)
- ▶ 보호동물 소개 및 상담 연결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상담(chatting) 및 전자 입양 신청서 작성·제출 등 제공

□ (중성화)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 중성화 지원

- 민간동물보호시설 중성화(특히, 개)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③ 민간동물보호 시설·단체의 기능 확대 및 수입원 다양화

□ (사례 검토) 미국·영국 등 사례 참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역할 가능성 검토

- 미국·영국 등의 동물 학대 방지 및 구조 등을 넘어 **파양·입양, 중성화, 행동지도** 등 적극적인 복지활동 지원 단체·시설 조사(23.下)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활동이 가능한 조직의 법적 성격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Pawinhand : 국내 동물입양 사회적기업(기업 후원, 기부금, Goods 판매 등 수입)

□ (수입원 다양화) 기부외에 동물복지 서비스 제공 등 수입원 다양화 유도

- 파양동물을 보호하고 구조·보호 동물을 입양*하면서 **관련 비용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기존 단체 활동 지원
- 공익적 관점에서 **중성화 수술서비스, 행동지도 서비스, 임시보호** 등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활성화 유도

* 미국 민간동물보호단체 ARL : 연간 4,358마리 중성화수술 지원(유상 서비스)

① 동물학대·애니멀호딩 시설 단속·폐쇄

□ (단속·폐쇄) 불법 동물학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시설 폐쇄

-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23~)
- 애니멀호딩 및 개선이 불가능한 불법 입지 시설은 지자체 행정 조치를 통해 시정명령·폐쇄 조치 및 농식품부 결과 보고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보호시설 처벌 및 조치 사항

- ▶ 동물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경우 등에 시정명령 및 시설 폐쇄 가능, 폐쇄 시설의 동물 소유권은 법 제85조(영업장의 폐쇄)에 준해 '동물 양도 등' 조치 실시(추후 「동물보호법」 개정시 법령 개정 검토)

□ (동물구조) 폐쇄시설 보호 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방안 마련

- 동물보호단체의 조직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자체 보호센터와 연계·협업하여 보호 중인 개체의 민간 입양 등 적극 지원('24~)

※ 전북 김제시 보호소의 과거와 현재

- ▶ '18년까지 안락사·자연사율이 90% 이상이었으나 A보호소 구조·입양 홍보로 3년간 안락사 0%, 김제시 보호소에서 입양 시 A보호소에서 기본검진 및 중성화수술 지원

□ (종사자교육) 민간 보호시설 운영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실시

- 「동물보호법」, 시설·운영기준, 동물관리, 기부금 회계 등에 대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신설(동물사랑배움터, '24)

* 신설 교육과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종사자 대상 적극 홍보 추진

2 정기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 **(정기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시설 및 운영상황 등 실태조사 정례화**
 - 신고제 도입 및 시행에 대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제대로 신고요건을 갖추고 운영되는지 매년 정기조사 실시('24~, 지자체)
 - 불법 입지 및 건축물 개선 진행 상황, 시설 개보수 등 정책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 및 보완조치 등 병행 추진
- **(제도개선) 정기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및 건축물 용도 문제, 시설·운영 요건 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법령 등 개정 추진('24~)

VI. 향후 일정

- **(법해석 통보)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유권해석 지자체 통보**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입지를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 공문 발송 및 개정현황 파악('23.下)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 확대 관련 농지과 유권해석 지자체 배포 및 안내('23.下)
- **(컨설팅) 농식품부·지자체·전문가·동물보호단체 참여, 컨설팅 지원단 구성**
 - 전체 시설에 대한 입지·건축물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단(가칭)' 구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23~)
- **(구체화) 해외사례 조사 등이 필요한 과제**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사례집 제작, 정기실태 조사 추진('23~)

참고 1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유형 및 개선방안

- ① 건축물 용도 쟁점(건축법, 국토계획법) → 유권해석 명확화
- ②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법) → 조례 정비
- ③ 가설건축물(또는 무허가건축물) → 재건축
- ④ 불법입지(개발제한구역·공익산지·농업진흥구역) → 부지 이전
- ⑤ 모두 해당 없으며 시설 보완 필요 → 시설 개보수 지원

구분	불법입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분뇨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구역특별법)	공익용산지 (산지보전법)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가설건축물	이전	이전	이전	재건축	-
단독주택 등 (주택, 창고, 기타)	-	-	-	조례정비, 개보수	유권해석 명확화, 개보수
동식물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	-	-	조례정비, 개보수	개보수

[별표6]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기준	[별표7]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기준
1. 일반기준 가. <u>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 구분,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 권장</u> 나. 동물의 탈출·도난·방역 등을 위해 <u>방범시설, 출입 통제 장치,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함</u> 다. 시설 청결 유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배수시설 필수, <u>바닥은 청소, 소독이 용이한 재질</u> 라. 사체 보관 가능한 <u>잠금장치</u> 있는 냉동시설 필수 2. 개별기준 가. 보호실 1)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할 것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3) 직사광선·비바람 등 피할 수 있는 시설(외부 노출 시) 나. 격리실 1) 독립된 건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2) 외부 노출 금지, 온습도 조절 가능, 채광 환기 충분 3) 질병 전염 예방 위해 별도 구획, 출입 시 소독 철저 4)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 해충이나 쥐 등 침입 방지. 관리물품 보관 시 서로 분리 구별 라. 진료실 있는 경우 진료대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구비, 위생적으로 관리해 2차 감염 예방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 조건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 가로, 세로 길이가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 라) 고양이: 50 × 70 × 60 2) <u>평평한 바닥 원칙, 철망인 경우 발이 빠지지 않을 것</u> 3) <u>청소·소독·건조 용이, 부식성 없고 잘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 입히지 않는 재질, 장치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u> 4) <u>배설물 처리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u> 5) 동물을 개별적 확인 가능한 외부 표지판 부착 바. 동물 운송용 차량 있는 경우 개별 수용장치, 화물 자동차는 직사광선·비바람 피할 수 있는 장치 설치	1. 일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 없게 관리 나. <u>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 구분, 질환·공격성, 나이 들거나,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 먹이는 동물은 분리 보호</u> 다. 동물 종류,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u>깨끗한 물을 공급</u>,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 라.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마. <u>분양 위해 노력, 자원봉사자 등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u>, 외부인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 설정 등 가능 바. 보호 중인 동물은 보호시설 내 보호 원칙, <u>중성화 권장</u> 사. <u>50마리당 1명 이상 보호·관리 인력 확보</u> 아. 여러 동물 함께 수용 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 1) 동물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동물종, 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합사 2) 함께 수용해도 개별로 쉴 수 있는 공간 필수 3) 물, 사료 경쟁이 없도록 그릇 형태 및 개수 적정 배치 2. 개별사항 가. 동물을 인수 또는 기증받은 경우 동물등록번호 확인, 개체별 별지 제13호서식 <u>보호동물 개체 관리카드</u> 작성, 처리결과 및 관련 서류 3년간 보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물등록 나. <u>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u>,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분양하지 않음.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및 동물등록 안내 다. 사체는 별도 냉동장치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 또는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u>동물장묘시설</u> 및 법 제71조제1항 <u>공설동물장묘시설</u>을 통해 처리